

의회사무처 구조조정은 총정원 223명에서 200명으로 10.3% 축소하려는 것입니다.  
 -4급 3명 축소 내역은 2개 상임위원회 축소에 따른 전문위원 2명과 의안담당관을 감축하는 것이며  
 -5급 3명 축소는 2개 상임위원회 감축에 따른 의안심의담당사무관 2명과 의안담당관 사무관 1명을 줄이는 것입니다.  
 -6급이하 17명(일반직 6명, 별정직 1명, 기능직10명)은 결원인원과 의회내 기능

이 없어진 교환원을 중심으로 감축하는 것입니다.  
 -의원보좌관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의회사무처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의회사무처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본청 구조조정 수준에 상응하여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.

3)직원파견 요청사항 삭제

현	행	개	정	안
제11조(직원의 파견요청)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		삭	제	

○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직원파견 관련규정을 신설하자 행정자치부에서 자제12200-330('98. 9. 14)호로 당해 기관내에서의 파견은 제도적으로 불인정되므로 시정을 요구한 바 있기에 서울특별시의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한 것으로 생각되나, 필요시 직원의 근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집니다.

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改正條例案  
 서울특별시의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중 “의회 의장의” 를 “의장의”로 한다.

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직원의 정원)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.

안 제7조를 제8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직원의 근무지원 요청)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(별 표)

##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 정원표

직	급	정원	정 원 내 용
일 반 직	1	1	지방관리관1
	4	13	지방서기관3,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직 4급 상당10
	5	22	지방행정사무관18,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5급 상당3, 지방기계사무관·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1
	6	29	지방행정주사25, 지방통신주사1, 지방전산주사1, 지방토목주사1 지방전기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1
	7	27	지방행정주사보23, 지방건축주사보1, 지방기계주사보 또는 지방전기주사보 1, 지방전산주사보1, 지방사서주사보1
	8	5	지방행정서기4(전문직 라급1), 지방사서서기1
	9	2	행정(전문직)2
	소계	99	
별 정 직	7	6	별정직7급 상당(편집요원2, 속기요원2, 영화기사1, VTR편집요원1)
	8	9	별정직8급 상당(의장비서1, 편집요원1, 속기요원7)
	9	7	별정직9급 상당(속기요원7)
	소계	22	
기 능 직	6	2	지방기계장2
	7	3	지방통신장1, 지방전기장1, 지방기계장1
	8	14	지방전기원2, 지방기계원1, 지방기계원(영사)1, 지방운전원1, 지방사무원(타자)4, 지방방호원3, 지방통신원2
	9	24	지방건축원1, 지방통신원1, 지방기계원1, 지방운전원3, 지방위생원(사역)4, 지방사무원(타자)4, 지방사무원(필기)7, 지방방호원2, 지방전기원1
	10	36	지방전기원1, 지방기계원 또는 전기원2, 지방사무원(타자)12, 지방사무원(필기)18, 지방방호원3
	소계	79	
총 계	200		